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0. . . (제 회)	

수 산 자 원 관 리 법 시 행 규 칙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산자원의 정밀조사·평가 결과 수산자원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총허용어획량계획 수립 시 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수산자원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7106호, 2020. 3. 24. 공포, 2020. 9. 2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내용을 시행규칙에 구체화하고자 하며, 아울러, 미반영된 「수산업법」 일부개정(‘10.1.25) 사항을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5. 18. ~ 6. 30.) 예정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산업법」 제2조제11호”를 “「수산업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수산자원관리위원회 심의 예외)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수산자원관리위원회 심의를 생략하여 총허용어획량을 설정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연도별 수산자원 정밀조사 평가 결과 현재 자원량이 적정자원량에 비해 30% 이상 감소한 어종의 경우
2. 최근 3년 평균 어획량이 최근 10년간 어획량의 70% 이하 수준인 어종의 경우
3.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총허용어획량이 설정된 어종에 대하여 3년 평균 어획량이 전체 어획량의 10%를 초과하거나 어획비율이 전년대비 100% 이상 증가한 어업의 종류의 경우
4. 특정 어종 또는 어업의 종류에 대해 2년 이상 시범으로 법 제36조제

1항에 따라 총허용어획량을 설정한 경우

부 칙

이 규칙은 2020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비어업인의 포획·채취의 제한) 법 제18조에 따라 「수산업법」 제2조제11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구 또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지 못한다.		제6조(비어업인의 포획·채취의 제한) ----- 「수산업법」 제2조제12호----- ----- ----- ----- ----- -----.		
1. ~ 7.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9조의2(수산자원관리위원회 심의 예외)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수산자원관리위원회 심의를 생략하여 총허용어획량을 설정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연도별 수산자원 정밀조사 평가 결과 현재 자원량이 적정자원량에 비해 30% 이상 감소한 어종의 경우		
		2. 최근 3년 평균 어획량이 최근 10년간 어획량의 70% 이하 수준인 어종의 경우		

	3. <u>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총허용어획량이 설정된 어종에 대하여 3년 평균 어획량이 전체 어획량의 10%를 초과하거나 어획비율이 전년대비 100% 이상 증가한 어업의 종류의 경우</u> 4. <u>특정 어종 또는 어업의 종류에 대해 2년 이상 시범으로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총허용어획량을 설정한 경우</u>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연 락 처	(044) 200 - 5533